

【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】

1. 계약기간

- 가. 계약기간은 계약날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.
- 나.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을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(계약변경)을 원칙으로 한다.

2. 계약목적

- 가. 지역사회와 정신적,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케어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
- 나.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어르신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다.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.

3.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

- 가. 장기요양급여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도 수가산정에 의하여 비용을 청구한다.
- 나.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,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.
- 다.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기타의료수급권자,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(희귀난치성, 만성질환자), 저소득층(본인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·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)은 장기요양비용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.
- 라. 계약자 (보호자)는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며, 계약이 정한 각 조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.
- 마.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 및 카드결제로 납부할 수 있다.
- 바.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다.

-급여종류 - 요양시설, 정원 [49]명

[첨부 1] 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급여제공 및 부담내역
(2.3:1, 30일기준)

구 분		월 이 용 료 내 역		비 고
월이용 보험료	1등급	86,030원x 30일	= 2,580,900	
	2등급	79,810원x 30일	= 2,394,300	
	3,4,5등급	75,360원x 30일	= 2,260,800	
보험료 (본인부담 금 20%)	1등급	86,030원x 30일	x 20% = 516,180	자부담 20%
	2등급	79,810원x 30일	x 20% = 478,860	
	3,4,5등급	75,360원x 30일	x 20% = 452,160	
감경 40%	경감 1등급	86,030원x 30일	x 12% = 309,710	자부담 12%
	경감 2등급	79,810원x 30일	x 12% = 287,320	
	경감 3,4,5등급	75,360원x 30일	x 12% = 271,230	
감경 60%	경감 1등급	86,030원x 30일	x 8% = 206,470	자부담 8%
	경감 2등급	79,810원x 30일	x 8% = 191,540	
	경감 3,4,5등급	75,360원x 30일	x 8% = 180,860	
	국민기초 생활수급자	면 제		

[첨부 2] 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급여제공 및 부담내역
(2.1:1, 30일기준)

구 분		월 이 용 료 내 역		비 고
월이용 보험료	1등급	90,450원x 30일	= 2,713,500	
	2등급	83,910원x 30일	= 2,517,300	
	3,4,5등급	79,240원x 30일	= 2,377,200	
보험료 (본인부담 금 20%)	1등급	90,450원x 30일	x 20% = 542,700	자부담 20%
	2등급	83,910원x 30일	x 20% = 503,460	
	3,4,5등급	79,240원x 30일	x 20% = 475,440	
감경 40%	경감 1등급	90,450원x 30일	x 12% = 325,620	자부담 12%
	경감 2등급	83,910원x 30일	x 12% = 287,320	
	경감 3,4,5등급	79,240원x 30일	x 12% = 285,260	
감경 60%	경감 1등급	90,450원x 30일	x 8% = 217,080	자부담 8%
	경감 2등급	83,910원x 30일	x 8% = 201,380	
	경감 3,4,5등급	79,240원x 30일	x 8% = 190,180	
	국민기초 생활수급자	면 제		

[첨부 3] 기관 비급여항목 제공 및 부담내역 (30일 기준)

비급여항목	금액(원) 30일기준	내용	산출근거
식재료비	180,000	점심/저녁 2,000*3	하루/ 6,000*30일
간식비	30,000	오전 1회/ 오후 1회 500*2	하루/ 1,000*30일
상급침실이용료(1인실)	20,0000		
상급침실이용료(2인실)	10,0000		

사. 기타 비용 부담액 :

- ①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: 사용량에 따라 실비수납가능, 또는 수급자가 원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함
- ②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수급자어르신으로 수급자가 원할 경우 당뇨병에 대한 당뇨체크시 사용량에 따라 청구 할 수 있음.
- ③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: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 (휴지, 비누, 수건 등)에 대해서는 비용수납 불가
- ④ 각종 프로그램 비용 :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므로 별도 비용수납은 불가
- ⑤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병원 등 외부 이동 교통비 등은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.
- ⑥ 이미용시 일부 실비 비용 청구 할 수 있음.

4.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가. 신원인수인(보호자 또는 보증인)의 권리

-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②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③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
- ④ 수급자에 대한 건강, 식사, 생활상담, 조연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⑤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⑥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
- ⑦ 서비스 해지 시 연계 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
- ⑧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·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
- ⑨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

나. 신원인수인(보호자 및 보증인)의 의무

-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·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
-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,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
-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
-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

기관 통보 의무

- ⑤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· 집기 등의 오손, 파손,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

5. 계약의 해제

가.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(또는 보호자)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- ①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
- ②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-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- ④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
나. 수급자 (또는 보호자)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.

【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】

1. 이용대상자 또는 가족은 이용계약 기간 중이라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.

가. 센터의 시설장에게 구두상 또는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고 기관은 즉시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로 변경하여 적용한다.

나. 계약기간 중 수급자의 상태변화나 장기요양인정 등급의 변동에 따른 급여제공 내용 변경에 의해 급여비용의 변경한다.

다.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

라. 표준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의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

2.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는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수급자 사정 후 급여계약서를 재작성하고,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확인을 받아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1부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변경을 한다.

【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】

1.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가. 건강관리 : 위생서비스, 의료서비스(물리치료), 간호서비스, 의약품 관리, 건강검진
- 나. 급식관리 : 급식 서비스, 간식 서비스, 영양관리
- 다. 여가활동지원 : 어르신의 고독, 고립감 해소를 위한 여가 프로그램, 치매예방 및 관리프로그램
- 라. 생활지도지원 : 수급자 보호 서비스, 생활지도 서비스, 요양 활동 서비스, 일상 생활 동작훈련
- 마. 응급의료 후송관리 : 협력 병원과 빠른 연계 진료

2. 비용 부담

- 가.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에 준하며, 요양급여 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,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.
- 나.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수급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.
- 다.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통해 수급자를 보호한다.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보호자에 비상연락을 취한 후 협의를 거쳐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.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보호자 또는 수급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서비스 제공자의 불성실한 태도나 응급발생 상황에 원인을 제공하였다면 계약자의 본인부담을 최소화, 또는 면제할 수 있다. 또, 서비스 제공자는 매년 행하는 건강검진 수검비용을 계약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.
- 라. 그 외 서비스의 비용을 계약자에게 요구하지 않는다.